

# 코로나-19, 해외입국자에 대한 대응조치

2021. 12. 31 (금)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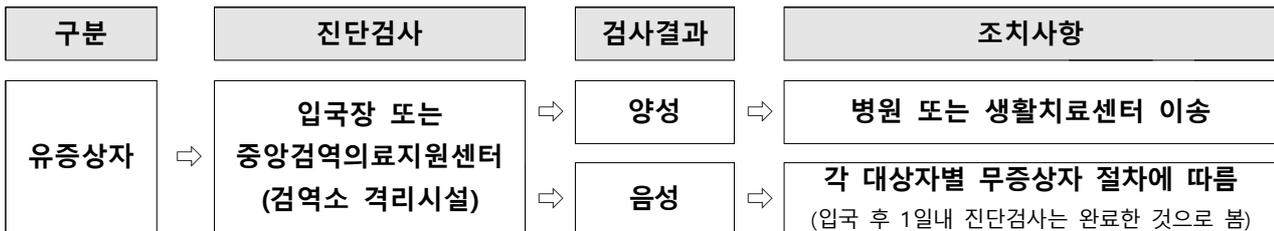
\* 아래 사항은 정보제공 차원에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.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, 중앙 방역 대책본부 홈페이지, 서울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##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흐름도(공항 입국자용)

<방대본 해외출입국관리팀, '21.12.16.(목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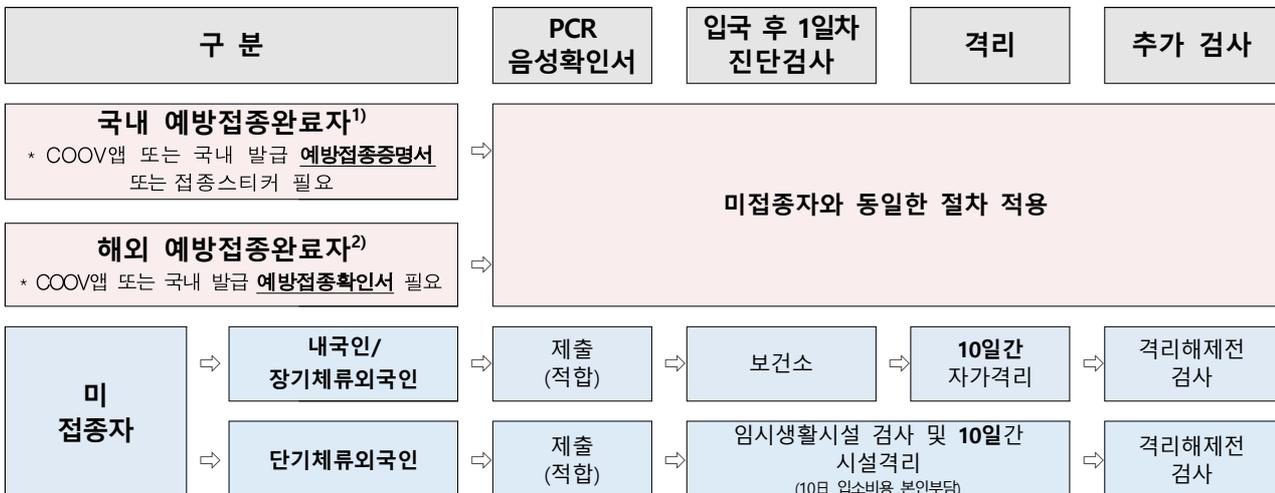
- ◆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(부적합 포함)한 내·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
    - \* 단, 입국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,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(비용 자부담)+자가격리 5일,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
    - ※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'PCR음성확인서 제출 FAQ' 참고
  - ◆ 오미크론 변이 유행국가 시설격리 조치, 아프리카 發 입국자 진단검사 등 강화
    -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\* 發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불허
    - \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  - ◆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-> 한시적으로 '모든 국가/지역' 지정(~'22.2.3.(24시) 입국자)
    - 예방접종완료자라도 10일간 의무 격리
- ※ 오미크론 변이 발생 관련 대상국가 및 입국불허 등 조치사항은 변동 가능함(변동시 재안내)

### □ 유증상자



### □ 무증상자

#### ○ 일반 국가 發 입국자



1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접종스티커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

\* 국내1회+국외1회 접종완료자의 경우,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1·2차 접종력이 모두 확인된다면, '국내 예방접종완료자'로 간주함(국내 시스템 등록 및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)

2)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예방접종완료자로, COOV(쿠브)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확인서로 증빙이 가능한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함(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조치 적용)

\* 단, 등록된 외국인 중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미적용함

\* 입국 당시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쪽 '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' 참고

※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(nip.kdac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서 출력 가능하며,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

※ 1), 2) 대상자의 경우, COOV앱 등으로 증빙 가능한 경우 대중교통 이용 가능함

### ○ 고위험국가 發 입국자

구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 검사	
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국* 發	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	5일째 검사, 격리해제전 검사
그 외 아프리카 국가 發	내국인/장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확인 후 자가격리	격리해제전 검사
	단기체류 외국인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시설격리 10일 (10일 입소비용 본인부담)	격리해제전 검사

\* 남아공, 보츠와나, 짐바브웨, 나미비아, 레소토, 에스와티니, 모잠비크, 말라위, 나이지리아, 가나, 잠비아

### ○ 격리면제서 소지자

☞ 세부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「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」에 따름

※ A1(외교)·A2(공무)·A3(협정) 비자소지자 또는 입국 전 한국대사관(또는 관계부처)에서 '격리면제서'를 사전발급 받은 경우 등

구분	PCR 음성확인서	입국 후 1일내 진단검사	격리	추가검사
격리면제서 제출	제출 (적합)	임시생활시설	음성 확인 후 격리면제 * 자가진단앱 설치	6~7일째 진단검사 실시 (보건소)

※ SOFA협정 적용자(주한미군, 관련자)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(단, 아프리카 發 입국자는 '음성' 확인시까지 임시생활시설 대기해야함)

## □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(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)

구 분	입국시	접종 이력 등록	증명서 발급 (보건소)	등록 후	재입국시
해외예방접종완료 내·외국인 (격리면제서 소지)	격리면제 *자가진단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면제 유지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내국인(한국 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 유지 (입국후 10일간 격리)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(외국적자) (격리면제서 미소지)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	예방접종확인서	격리 유지 (입국후 10일간 격리)	격리대상 *격리면제서 소지시 격리면제 가능
국내1회+국외 1회 내·외국인	격리 *자가격리앱 설치	관할 보건소 방문 등록 *등록 즉시 격리면제	예방접종증명서	격리면제 전환 *자가격리앱 삭제	격리면제 *격리면제서 불필요

※ 상기 대상자의 경우, 관할 보건소에서 해외 접종이력을 등록\*하여야 하며 등록 이후 확진자 밀접접촉시, 사회적 거리두기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가능

\* ①성명, ②생년월일, ③백신종류, ④접종일, ⑤접종기관명, ⑥접종기관 또는 해당 국가 보건당국의 직인 등을 포함한 문서화된 자료.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(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인증 필요)를 함께 제출해야 함.

※ 국내 시스템 등록 후 재입국 시, 검역단계에서 COOV앱 또는 국내에서 발급 받은 예방접종확인서(예방접종증명서) 제시하여 예방접종완료자임을 증빙하여야 함(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불가)

## < 강남구 선별진료소(검사소) 운영 >

구분	운영장소	운영시간		비고
		주중	주말(공휴일)	
선별진료소	강남구 보건소	9:00~21:00	9:00~18:00	02-3423-5555
강남구 임시선별검사소	삼성역 6번 출구	9:00~17:00	9:00~13:00	*접수마감 : 종료 30분 전 * 혼잡시 조기 마감
	세곡동 방죽공원 (울현동 254-3)			
	한티근린공원 (대치역 2번출구)	9:00~17:00		
	SRT수서역	10:00~17:00		

## <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안내>

-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입국 시, 자가격리 면제 적용이 제외되는 국가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**\*단,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한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, 변동 시 재안내 예정**

### 【주요내용】

- 최근 신종 변이바이러스(오미크론)의 전세계적인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'21.12.3부터 지정중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를 모든 국가/지역으로 **'22.1.7부터 '22.2.3까지 지정 연장**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**발** 입국자는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면제 적용 제외

※해외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,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를 소지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면제 적용 제외

**\*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: 모든 국가/지역**

### 【적용기간】

- **'21. 1. 7.(0시) ~ '22. 2. 3.(24시) 입국자**

※ 기 적용기간 ('21. 12. 3.(0시) ~ '22. 1. 6.(24시) 입국자)

### 【참고사항】

- **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변경 시 공지 예정**

- 단, 오미크론 변이 발생동향 등에 따라 관련 조치는 수시변동 가능 있으며, 변동 시 재안내 예정

## <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>

◇ 해외입국 'PCR음성확인서' 제출기준이 '22년 1월 13일부터 강화됩니다.

\* (기존) 출발일 72시간 이내 발급 →(변경) 출발일 72시간 이내 검사

### 1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기준

구분	기준
<b>① 검사방법</b>	▸ NAATs(Nucleic acid amplification tests) 기법에 기초한 검사일 것 * 유전자 증폭 검출(RT-PCR, LAMP, TMA, SDA, NEAR 등)에 기반한 검사에 한해 인정하며, 항원(Antigen, AG)·항체(Antibody) 검출검사(RAT, ELISA 등)는 인정하지 않음 * 검사방법과 상관없이 검체채취를 스스로 실시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.
<b>② 검사 및 발급시점</b>	▸ 출발일 기준 72시간(3일)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일 것 * (예시) '22.1.14. 10:00시 출발 시 '22.1.11. 0시 이후 검사한 것으로 확인된 PCR음성 확인서만 인정 ※ (~'22.1.12.) 출발일 기준 72시간을 초과하여 검사한 경우라도, 72시간(3일) 이내 '발급'한 확인서라면 인정 → ('22.1.13.~)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 초과한 경우 불인정
<b>③ 필수기재</b>	▸ 성명*, 생년월일**, 검사방법, 검사일자, 검사결과, 발급일자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*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(여권과 성명이 동일하다면 미들네임은 생략 가능) **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
<b>④ 검사결과</b>	▸ 검사 결과가 '음성'일 것 *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'미결정', '양성'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
<b>⑤ 발급언어</b>	▸ '검사방법'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*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,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 서류를 함께 제출 시 인정 (단, 개입번역본의 경우 공증기관이나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함)
<b>⑥ 검사기관</b>	▸ 필리핀, 우즈벡의 경우,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일 것 * 검사기관 지정 국가는 변동 가능/질병관리청(검역소) 홈페이지, 대사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 ※ 그 외 국가는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의 경우 인정

※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(<http://overseas.mofa.go.kr>)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2. "PCR 음성확인서" 제출 예외 대상

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- 항공기 승무원
- 한국에서 출국하였으나 상대국에서 입국불허 등으로 해외 공항에서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귀국한 경우 (본인입증책임)
-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("대한민국 선원수첩" 소지자에 한함)
- 미얀마에서 입국한 '내국인'·'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'(~'22.1.12.)  
 \* '22.1.13일부터 미얀마 發 내국인 등은 예외없이 음성확인서 제출 대상

### 3.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제출 시 조치

- (입국 전) PCR음성확인서 미소지 또는 기준미달 음성확인서 소지 시 항공기 탑승 불허  
 ※ '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'은 음성확인서 미소지(기준미달 포함) 시에도 항공기 탑승 가능
- (입국 후) 기준미달 PCR음성확인서 제출 시, 내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5일간 시설격리 (입소 비용 12만원/일 자부담 원칙) 후 5일간 자가격리,  
 - 외국인은 입국불허  
 ※ '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(싱가폴 선원 제외)'은 음성확인서 기준미달 시에 10일간 자가격리 원칙